

6.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: 2023년 7월 7일
- 발 의 자 : 이성오·김대현·김원규·김지만·김태우  
류종우·윤권근·이재숙·조경구 의원
- 회부일자 : 2023년 7월 10일
- 상정일자 : 제30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 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년 7월 24일), 원안 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성오 의원)

### □ 제안이유

- 지난 삼일절 세종시 모 아파트에서 일장기를 게양하여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있어, 이를 계기로 나라 사랑의 소중함과 국기 게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. 이에 다가오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기 게양일 등을 정비하고 국기의 점검·관리 및 표창 조항 등을 마련하여 ‘독립운동의 성지’인 대구에서 태극기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여 시민에게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본 개정안을 준비하게 됨.

## □ 주요내용

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대한민국 국기와 국기 선양에 대한 뜻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고,
- 안 제4조에서는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8조에 따라 국기의 게양일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고,
-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이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월 1회 이상 점검·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·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를 적극 권장할 수 있게 하며, 시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 및 출장소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고 국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하여 올바른 국기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음.
- 마지막으로, 안 제9조에서는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에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기 게양을 장려하고자 하였음.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이신희)

#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▶ 「대한민국국기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시민들이 국기를 존중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게 하여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 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것임.

#### ○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
- ▶ 교육감이 국기교육을 통해 학생이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별도의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에서의 교육감 책무 규정(제3조제2항)은 삭제함.

※ 전국 교육청 국기게양일 조례 현황 : 서울, 인천, 경기, 전남

- ▶ 시장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국기·깃봉·깃대 등을 점검·관리해 국기의 오염과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고, 국기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여 시민들이 오염·훼손된 태극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안 제8조(국기의 점검·관리)를 신설함.

- ▶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,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안 제9조(표창)를 신설함.

※ 전국 포상 조항 현황 : 서울, 인천, 대전, 울산, 부산, 경기, 충북, 경북, 경남, 제주

- ▶ 안 제8조(시행규칙)에서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, 본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조례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은 시장이 제정할 수 있으므로 안에서는 이를 삭제함.
- ▶ 그 밖에 안 제2조제2호,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,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, 안 제7조 등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 내용을 보기 쉽게 정비한 것임.
- ▶ 안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였음.

○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

- ▶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맞춰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,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기의 관리·점검과 국기수거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 국기 선양 우수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기 계양 장려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
- ▶ 본 조례의 목적대로 시민들이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,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업무 소관부서는 국기 보급 및 국기 선양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국기 점검·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조례 제4조제2항제2호는 조례상 있지도 않은 제5호가 명시되어 있고 ‘시기’에 관한 사항도 있는 등 정비되지 않은 규정이 너무 많은데, 10년 동안 개정이 되지 않고 있었음. 수많은 담당자 중 한 명이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다면 대구시에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함.</li>   <li>○ 국기수거함은 얼마나 설치되어 있고, 국기 폐기 방법에 대한 홍보방안이 있는지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례를 꼼꼼히 살피지 못해 송구스럽고,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음.</li>   <li>○ 국기수거함은 설치 대상 160개소 중 153개 약 96%가 설치되어 있으며,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홍보를 위해 구·군과 협조해 소식지나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임.</li> </ul>

## 5. 토론 요지

○ 없 음

## 6. 수정안 요지

○ 없 음

## 7. 심사결과

○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## 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